

1. 개정이유

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일원화(시행규칙 별표5의2 개정)함에 따라 표준임대료 할증 등에 관한 규정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할증적용대상 및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비율 변경

나. 할증적용 대상중 자산기준 초과 관련 규정 변경(규칙 제13조제2항→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

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바목중 “가목 및 나목에”를 “가목에”로 하고, 같은 호 사목중 ‘제2항에’를 ‘제3항에’로 하며,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비율

세대원수별 공급면적	할증비율	
	입주시	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
1인 :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(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) 2인 :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<u>80제곱미터</u> 이하 3인 : 전용면적 <u>80제곱미터</u> 초과 85제곱미터 이하	입주불가	105%
1인 :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<u>80제곱미터</u> 이하 2인 : 전용면적 <u>80제곱미터</u> 초과 85제곱미터 이하	입주불가	110%
1인 : 전용면적 <u>80제곱미터</u> 초과 85제곱미터 이하	입주불가	115%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)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5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적용대상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~마. (생략)</p> <p>바. 규칙 별표5의2 제5호 <u>가목</u> 및 <u>나목</u>에 따른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사람</p> <p>사. 규칙 제13조 <u>제2항</u>에 따른 자산기준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사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할증 비율 가.~나. (생략)</p> <p>다.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 정도에 따른 할증비율</p>	<p>제9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)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5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적용대상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~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----- <u>가목</u> <u>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사. ----- <u>제3항</u>----- ----- 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할증 비율 가.~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 정도에 따른 할증비율</p>

세대원수별 공급면적	할증비율		세대원수별 공급면적	할증비율	
	입주시	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		입주시	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
1인 :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60 제곱미터 이하 (중증장애인은 50 제곱미터 초과 60 제곱미터 이하)	105%	105%	1인 :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60 제곱미터 이하 (중증장애인은 50 제곱미터 초과 60 제곱미터 이하)	입주불가	105%
2인 :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<u>70</u> <u>제곱미터 이하</u>	입주불가	110%	2인 :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<u>80</u> <u>제곱미터 이하</u>	입주불가	110%
3인 : 전용면적 <u>70</u> <u>제곱미터 초과</u> 85 제곱미터 이하			3인 : 전용면적 <u>80</u> <u>제곱미터 초과</u> 85 제곱미터 이하		
1인 :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<u>70</u> <u>제곱미터 이하</u>	입주불가	115%	1인 :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<u>80</u> <u>제곱미터 이하</u>	입주불가	115%
2인 : 전용면적 <u>70</u> <u>제곱미터 초과</u> 85 제곱미터 이하			1인 : 전용면적 <u>80</u> <u>제곱미터 초과</u> 85 제곱미터 이하		